

2014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인턴십 **참여기업 및 인턴 모집 공고**

청년실업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14년 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인턴십(청년, 무역, 시니어)」 과 관련하여 참여기업 및 인턴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. 2. 21

서울특별시장

1. 모집분야 및 대상기업

구 분	대상기업
청년인턴 (특성화고교 포함)	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소기업으로 인턴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기업
무역인턴	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 1인 이상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소기업으로 인턴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수출(준비)기업
시니어인턴	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소기업으로 인턴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기업 ※ 제외 업종(업무) : 경비, 청소, 주차관리 등 시설관리, 주유소, 편의점, 마트 캐셔, 음식점 서빙, 배달, 운송, 도시가스 및 케이블방송 검침 등 기타 단순 노무

2. 대상인턴

구 분	대상기업
청년인턴 (특성화고교 포함)	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8세 이상 35세 이하 구직자로서(1978.1.1.이후 출생한 자) <u>채용예정일(매월 1일)로부터 최소 1개월간 미취업상태인자</u> ※ 군필자의 경우(병적증명서, 전역증 등으로 확인)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- 군복무기간 1년미만 : 1세, 1년이상~2년 미만 : 2세, 2년이상 : 3세 연장 ※ 특성화고교 인턴 : 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자
무역인턴	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8세 이상 구직자로서 <u>채용예정일(매월 1일)부터 최소 1개월간 미취업상태인자</u>
시니어인턴	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50세 이상 구직자로서 (1964.12.31.이전 출생한 자) <u>채용예정일(매월 1일)로부터 최소 1개월간 미취업상태인자</u>

3. 제외대상

가. 기 업

- 고용보험 미 가입 기업
- 소비·향락업체(단란주점 등),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 (용역업체 포함)
※ 근로자파견업체의 경우 본사(내근) 인턴근무는 가능
-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
(보험회사, 제약회사, 물류도매업 등)
- 학원(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속소에 관한 법률」 및 「도로교통법」에 의한 학원), 숙박·음식업종 사업(다만, 호텔업·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)
-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
- 기타 서울시에서 인턴십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
(비영리기업, 어린이집, (예비)사회적기업 등)
- '12년도 이후 서울시 중소기업인턴십 사업에 연속 참여하여 50%이상 중도 퇴사자 발생 기업
- '12년도 이후 인턴 채용 후 정규직전환 실적이 1건도 없는 기업
- 채용예정일로부터 1개월간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
- 지원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해 지원금 환수, 인턴 신규채용 금지 조치일로부터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기업
-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, 상습임금체불사업장 등 중소기업 인턴십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

나. 인 턴

- 서울시 중소기업 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
- 대학 재학생(졸업직전 방학 중이거나 방송·통신·사이버·야간학교 재학생은 참여가능)
-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
-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
-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,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의 당해기업 인턴참여
- 간호(조무)사, 이·미용사, 운전기사, 보육교사, 사회복지사 등의 면허·자격을 가지고 당해 면허·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위의 인턴참여

3. 참여기업 선정기준

구 분	대상기업 및 선발기준	비 고
1순위	전년도 정규직전환율 50% 이상으로 2명 이상 정규직전환 기업	
2순위	인턴기간 급여제시액 높은 順	※ 참여기업 선정 후 제시한 급여액 미준수 시에는 지원 중단 및 1년간 인턴십 참여금지
3순위	정규직 전환율 50%이상이고 1명 이상 전환기업	※ 정규직 전환율상위 ⇒ 정 규직 전환자 수 많은 기업 順

※ 선정기준 관련 유의사항

- 정규직전환율(%) = 참여기업 신청일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턴십 참여자 / 기업 별 청년인턴 선발 총인원
- 정규직 전환율은 참여기업 신청일 현재 정규직 전환 후 근무하고 있는 자를 기준으로 함
- 1,2순위 업체 미달시 3순위 업체 선발

4. 지원인원 및 산정방법

가) 상시 근로자 수의 20% 이내(시니어인턴은 30%, 소수점 이하 반올림)로 하되, 동일사업장 최대 5명 이내

- 상시근로자수는 공공 인건비(고용노동부 인턴제 및 서울시(자치구 포함) 고용지원사업 등)를 지원받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

나) 중복지원 배제 : 가)의 최대 신청 가능인원 중에서 신청일 현재 고용노동부, 서울시(자치구 포함) 인턴십 및 4대 도시형 고용지원사업 등에서 공공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, 그 인원만큼을 제외

(예시) 상시근로자가 25명이나, 고용노동부 청년인턴 2명, 서울시 무역인턴 1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

☞ 상시근로자는 22명으로 간주하여 지원인원 산정

☞ 22명 x 20% = 4명 - 3명(현재 지원받는 인원 제외) = 1명 채용 가능

다) 서울시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선정기업 및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우수 기업은 상시근로자 30%이내 1명 추가지원 가능

5. 지원기간 : 근무개시일로부터 3개월(정규직 전환 시 9개월 추가 지원)

6. 지원조건 및 내용

- 지원조건 : 기업이 인턴 1인당 월 임금 140만원 이상 지급 시
 - ※ 시니어인턴 중 60대 이상은 월108 원 이상
- 지원내용 : 인턴 3개월 - 약정급여의 50%, 정규직 9개월 - 약정급여의 70%, 월 최대 100만원
 - ※ 4대 보험가입 필수 : 가입일자는 약정시작일과 일치
- 근무시간 : 기업과 취업자간 체결한 인턴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(당해 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기준)
- 연장근로, 휴게시간, 휴일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, 당해기관의 단체협약,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

7. 진행일정



- 매월 5일까지 신청분에 대해 매월 15일 참여기업 선정(공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)
예) 3월 17일 참여기업 신청한 경우 : 4월 15일 참여기업 선정

※ 올해 첫 참여기업 선정은 3월 1일~10일까지 신청분에 대하여 3월 17(월) 발표

- 선정된 기업은 수시로 인턴 채용승인 신청가능하며 매월 25일 서울시 채용승인을 받고, 익월 1일 인턴 근무 개시(공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)
예) 3월 15일 참여기업으로 선정 받은 후 채용 면접 후 4월 18일 채용승인 신청한 경우 :
4월 25일 서울시의 채용승인 받은 후 5월 1일부터 근무개시

8. 참여기업 신청 방법 및 절차

가) 신청방법 :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온라인 신청(<http://job.seoul.go.kr>)

※ 2014년 3월 1일(토)부터 가능

※ [고객센터] - [고용지원사업] - [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]

- [지원사업 선택] - [참여기업 신청서 작성] - [제출하기]

※ 기업회원이 아닌 기업은 회원 가입 후 사업자등록증 팩스 송부

(fax. 02-731-9540) ⇒ 승인 (tel. 02-731-9535)

- 나) 선정결과 발표 : 매월 15일(공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)
- 다) 참여기업 신청 시 작성한 구인공고에 대해 채용 면접 진행
- 라)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등 구직자 알선 받아 인턴 선발
- 마) 인턴 선발 후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시에 채용승인 신청

※ 채용승인 신청 시 첨부 서류

- ① 채용예정자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
- ② 주민등록등본(채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내 발급본)
- ③ 채용예정자의 가족관계증명서

- 바) 서울시에서 인턴 적격여부 확인 후 최종 선발자 승인
- 사) 채용승인 후 근무개시(기업-인턴 약정체결) 및 서울시와 기업간 인턴지원협약 체결
- 아) 대표 또는 담당자 및 인턴 직무능력향상 교육 실시(의무교육 - 각각 1일 7시간)

9. 인턴근무 희망자 참여 방법

가)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자치구, 고령자취업알선센터,

워크넷(서울시 연계 동의) 구직등록

나) [취업정보] - 구인정보 - 사업별[지원사업]선택 - [희망기업선택] - 온라인지원/알선요청

10. 유의사항

가) 채용기업은 인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한 근로관계가 성립되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권리·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합니다.

나) 인턴 채용기업은 서울시와 「중소기업 인턴 지원협약서」를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.

다) 인턴 채용기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인턴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

- 1) 서울시(자치구 포함) 인턴십, 고용지원사업 등 공공 인건비 지원인원이 인턴 신청가능인원을 초과한 경우(통합 지원한도 적용)
- 2) 참여기업 신청시 제시한 조건(약정 임금 수준 등)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
- 3)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기업에 인턴으로 채용코자 하는 경우
- 4)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었거나 인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- 5) 참여기업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등 (별첨 매뉴얼 참조)

※ 부정수급 시 형사고발조치

〈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〉

· 제40조 :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

11. 문의처 및 홈페이지

가) 문의처 :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(☎ 731-9531~5)

나) 홈페이지 :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<http://job.seoul.go.kr>